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이천시(2000.9.8)

2. 주요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제1호
-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등), 시행령 제6조제3호,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3호
- 폐기물관리법제63조(과태료)제3항제2호

3. 검토의견

- 본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하고(안 제2조·제5조·제6조·제10조 및 제14조),
-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및 음식물쓰레기부적정배출에 따른 개선명령이행완료신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였으며(안제7조·제8조),
 -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 설치 강제 가능 규정을 삭제하였음(안제3조),
- 음식물쓰레기의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 음식물쓰레기 및 부산물의 건조처리시의 수분함량기준을 강화하고(안제6조제2호),
 -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및 수거용기 사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안제12조제3항),
 -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음(안제13조의2),

- 과태료부과기준에 있어서 과태료부과 이전에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현장계도와 이행명령 등의 사전절차를 신설한 것으로(안제14조 별표2) 전체적인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

- 안제14조 별표2의 과태료부과기준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위반시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상기 별표는 1차 위반시 현장계도 또는 이행명령 등의 사전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상위법에 근거없는 절차를 규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전절차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